

영미 및 한국의 사서직제 분석과 시사점

Analysis and Suggestions of the Librarians as Public Servants in USA, UK and Korea

윤 희 윤(Hee-Yoon Yoon)*

< 목 차 >

- | | |
|-------------------------|------------------------|
| I. 서론 | 2. 사서직원의 현황과 직제 |
| II. 미국의 공직분류 및 사서직제 분석 | IV. 한국의 공직 및 사서직제와 시사점 |
| 1. 공직의 종류와 체계 | 1. 공직의 분류체계 |
| 2. 사서직원과 사서직제 | 2. 사서직제의 분석과 시사점 |
| III. 영국의 공직구조 및 사서직제 분석 | V. 결 론 |
| 1. 공직구조의 개혁과정 | |

초 록

이 연구는 영미 양국과 국내의 공직 및 사서직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적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미의 사례는 직제의 선진성과 시사점을, 그리고 국내의 직제분석은 그 후진성과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과제인 사서직제 개선방안의 핵심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의 사서직제가 문화선진국의 그것을 준용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및 사서직에 내재된 이론적, 현실적 취약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직제개선은 유연한 사고와 주체적 행위가 정합되어야 그 가능성도 높아진다.

주제어: 공직, 공직분류, 직제분석, 사서직, 사서직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ublic servant and librarian position in USA, UK, and Korea and to give suggestions to improve the position classification of librarianship in Korea. Professional librarian positions in USA and UK are very useful to understand the excellency of 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librarian positions in Korea is useful to catch the present situation of librarianship and its backwardness. This paper can use for the grounds of an improvement of the librarian position in Korea. In order to improve current position classification of librarianship, we have to overcome a theoretical and actual weakness of the libraries and librarians and to act as the main stream for position reform.

Key Words: Public Servants, Classification of Public Position, Position Analysis, Librarianship, Librarian Position System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eagu.ac.kr. <http://biho.daegu.ac.kr/~yhy/>)
• 접수일: 2005년 5월 15일 • 최초심사일: 2005년 5월 30일 • 최종심사일: 2005년 5월 30일

I. 서론

사서직은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를 기반으로 정보자료를 수집·봉사·보존하는 직업이다. 그러므로 사서직은 다른 직종과 차별화되는 특성, 즉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 자료·시설·정보기술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때 시너지 효과가 발현되는 특수성, 이용자에 의해 직업적 가치가 평가되는 객관성, 그리고 다년간의 실무경험과 연수(연구) 과정을 통하여 축적된 지식과 경력이 핵심기능에 재투입되는 누적적 순환성 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사회 뿐만 아니라 사서직 스스로의 전문직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도서관을 물리적 공간으로 한정하는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사서직의 핵심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사회적 존재가치를 제고시켜야 한다. 그러나 사서직의 철학적, 교육적, 제도적 문제를 외면한 모든 대안은 대중요법에 불과하다. 그래서 문화 선진국일수록 자료와 이용자의 연결고리인 사서의 전문직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해법이 학제 및 직제의 개편이기 때문에 영미를 비롯한 선진국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최소 요건으로 설정하고 직업적 차별성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사서직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사서직제는 행정직군에 예속되어 있고 상한직급도 다른 직렬에 비해 낮다. 이러한 편제는 과거와 달리, 모든 행정기능의 세분화와 전문성을 강조하는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다. 더구나 인터넷 정보환경에서의 사서직은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자료의 최적 개발과 체계적 정리를 전제로 정보제공 및 게이트웨이 기능을 극대화해야 하는 직업이다. 요컨대 사서직은 행정직이 아니다. 도서관의 일반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원 또는 사서직원이 실재한다는 사실이 반증한다. 그럼에도 모든 실정법은 사서직을 행정직의 이류로 규정하고 있다. 사서직의 전문직성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지식경제사회와 지식강국화가 불가능하고, 문화복지도 구현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사서직의 숙원인 직제개편을 정언적 명제로 상정하여 영미 양국과 국내의 공직 및 사서직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적출하고자 한다. 이미 여러 전문가가 국내 사서직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급한 바 있지만, 대다수는 논거가 부실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영미의 사례는 직제의 선진성과 시사점을, 그리고 국내의 직제분석은 그 후진성과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과제인 사서직제 개선방안의 핵심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II. 미국의 공직체계 및 사서직제 분석

1. 공직의 종류와 체계

미국의 공무원은 연방법률과 각주의 법률에 따라 국가직(연방)과 지방직(주 및 지방정부)으로

양분된다. 연방공무원은 정치적 임명직인 고위관리직(ES : Executive Schedules), 상급적인 고급 공무원단 또는 고위관리자단(SES : Senior Executive Services)과 업적급 매니저(Merit Pay Manager), 그리고 일반직(GS : General Schedule)인 12등급 이하의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소위 고급공무원단은 1978년 카터정부가 「공무원인사제도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을 제정하여 기존의 일반적 공무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시에 최고의 유능한 리더십을 육성할 목적으로 전격 도입한 것이다. 부연하면 SES는 고위공무원의 보수와 지위를 향상시키고, 일반직과의 긴장·갈등관계를 완화하며, 인사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정책기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 대상은 행정부 내에서 직위에 기초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총 18개 등급 가운데 이른바 'GS-16~18'에 해당하는 고급공무원과 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고위직(ES)의 5개 레벨(I~V) 중에서 하위 2개(IV, V)의 고급관리자이며, 그 숫자는 약 8천명 내외이다. 이들은 개인의 능력 및 업적을 기준으로 임용되며, 그 종류는 경력직(career appointment, 신분보장), 비경력직(non-career appointment, 신분 비보장), 계약직(limited appointment, 3년), 임시계약직(temporary appointment, 18개월)으로 대별된다. 또한 이들은 동일기관 내의 다른 직위로 이동할 수 있고,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도 가능하다. 요컨대 SES는 정부정책을 관장하는 최고위 공무원단으로서 주로 관리직과 감독직이며, 계급의 개념이 없고 보수도 개별성과에 따라 ES1~ES6까지 책정된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미국의 공직체제는 1923년 「직위분류법」(Classification Act)을 제정함으로써 '동일한 직무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 제도의 핵심내용은 모든 공직을 직무의 내용과 책임정도 그리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직, 직군, 직렬, 직급으로 분류하고 다시 봉급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세분하는 것이었다. 물론 전술한 것처럼 CSRA에 의거하여 고급공무원단을 설치하고 1979년 7월 1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계급제를 가미하였지만, 기본골격은 여전히 직위분류제이다.

미국의 공직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상근직, 비상근직, 일용직), 직위성격(정규직, 비정규직 또는 한시직), 임용형태(비정규직, 임기직, 조건부 경력직, 보수표 A~C에 해당하는 예외직), 보수표(일반직 보수표, 연방 임금체계, 고위공무원단, 상위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특별 보수체계에 따른 직종)를 기준으로 16개 유형으로 세분되고 있다. 직군과 직렬의 경우, 1952년에는 2개 직, 27개 직군, 569개 직렬이 존재하였으나, 1997년에는 1개 직, 22개 직군, 437개 직렬로 축소되었으며, 직급도 1949년에 개정된 직위분류법에 근거하여 18개 등급(최하위 1등급~최상급 18등급)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직군이 1개 증가한 반면에 직급과 직렬은 상당히 줄었다. 미국 연방공무원 중에서 직업공무원을 대표하는 일반직(GS)의 직위분류는 「United States Code」의 'Title 5 :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아래의 'Part III : Employees', 'Subpart D : Pay and Allowances', 'Chapter 51 : Classification'(Sec. 5107 : Classification of Positions)에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6권 제2호)

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연방정부 인사관리국의 출판기준에 따라 각 기관은 적당한 직위 및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Sec. 5104 : Basis for Grading Positions'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을 1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직군명과 직렬수는 <표 1>과 같다.¹⁾

<표 1> 미국 연방공무원(일반직)의 직군 및 직렬 현황

코드명	직군명칭	직렬수
GS-0000	기타(Miscellaneous Occupations)	26
GS-0100	사회과학·심리학·복지(Social Science, Psychology, and Welfare)	29
GS-0200	인사관리(Human Resources Management)	8
GS-0300	일반관리·서기·사무(General Administrative, Clerical, and Office Services)	32
GS-0400	생물학(Biological Sciences)	33
GS-0500	회계·예산(Accounting and Budget)	17
GS-0600	의료·병원·치과·보건(Medical, Hospital, Dental, and Public Health)	50
GS-0700	수의학(Veterinary Medical Science)	3
GS-0800	공학·건축(Engineering and Architecture)	32
GS-0900	법률(Legal and Kindred)	19
GS-1000	정보·예술(Information and Arts)	20
GS-1100	비즈니스·산업(Business and Industry)	24
GS-1200	저작권·특허·상표(Copyright, Patent, and Trademark)	9
GS-1300	자연과학(Physical Sciences)	26
GS-1400	도서관·문서관(Library and Archives)	6
GS-1500	수학·통계(Mathematics and Statistics)	11
GS-1600	장비·설비·시설(Equipment, Facilities, and Services)	8
GS-1700	교육(Education)	11
GS-1800	조사(Investigation)	22
GS-1900	품질관리·검사·품질(Quality Assurance, Inspection, and Grading)	4
GS-2000	조달(Supply)	9
GS-2100	수송(Transportation)	19
GS-2200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2
계	23	420

즉, 미국의 직업공무원은 5개 범주(전문직, 행정직, 기술직, 서기직, 기타)를 기준으로 23개 직군, 420개 직렬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의료직의 직렬수가 50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생물학 관련직(33개), 일반관리직(32개), 공학 및 건축직(32개), 사회과학·심리·복지직(29개)의 순이며, 정보기술이 2개로 가장 적다. 코드번호 GS-1400인 '도서관·문서관'은 독립직군이며, 그 아래에 6개의 직렬이 있다. 한편, 직급을 15개 등급으로 축소할 배경은 고위공무원제의 도입으로 상위의 16~18등급을 폐지하는 대신에 그 등급에 상위직(senior level)과 고급과학기술직(senior scientific and technical level) 및 고위공무원단을 신설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등급의 호봉

1) United State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Handbook of Occupational Groups and Families*(Washington, D.C. : OPM, 2002), pp.14-20.

(step)은 10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2. 사서직원과 사서직제

지난 20년간(1980~2001) 미국 연방 및 지방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수는 연평균 1.5%씩 증가하여 2001년 3월 현재 총 2,097만명에 달하였다. 이들을 정부수준별로 세분하면 연방정부가 12.9%(2,698천명), 주정부가 23.8%(4,985천명), 지방정부가 63.3%(13,287천명)이며, 기능별로는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병원, 경찰, 우편서비스, 교정(교도소), 국방의 순으로 많다.²⁾

이 가운데 도서관 직원은 전체 공무원의 0.88%인 18만 5천명(연방정부 4천명, 주정부 1천명, 지방정부 18만명)이다. 국가직의 대부분은 의회도서관의 직원이며, 1997년에는 전임직원수가 4,010명이었으나 그 후에 계속 감소하다가 2002년에 4,18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03년 현재는 총 4,151명이다. 결국 7년 전과 비교할 때 총 3.5%, 연평균 0.5%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³⁾

그리고 도서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지방정부 산하의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연도별 현황은 <표 2>와 같다.⁴⁾ 최근 7년간(1994~2001) 공공도서관수는 2.3%(208개) 증가한 반면에 사서직원은 약 16%(6,379명) 증가하였으며, 연도를 불문하고 전체직원 중에서 ALA-MLS를 소지한 비율은 23% 내외이고, 사서직원 중 MLS 소지자는 68% 정도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0년말을 기준으로 공공도서관의 법적 봉사대상인구별 직원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2> 미국 공공도서관 직원의 연도별 현황(1994~2001)

구분 \ 연도		1994	1996	1998	2001
도서관수		8,921	8,946	8,964	9,129
상근직원 (FTE) (명)	사서직원수	38,048.4	39,095.5	40,689.2	44,427.5
	ALA-MLS 소지자	25,879.1	27,357.3	28,177.7	30,093.7
	기타 직원	74,740.9	78,716.6	82,754.6	89,028.2
ALA-MLS 소지비율(%)	MLS/사서직원	68.0	70.0	69.3	67.7
	MLS/전체직원	22.9	23.2	22.8	22.5

2) U.S. Census Bureau,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 2003*(Washington, D.C. : Th Bureau, 2003), p.312.

3) Library of Congress, *Annual Reports of Librarian of Congress : 2001*(http://www.loc.gov/about/annrept/annreports/fy2001/loc_2001-pgs_225-238.pdf) ; <http://www.loc.gov/about/reports/> [cited 2004. 11. 19]

4) U. 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 Fiscal Year 2001*(Washington, D.C. : NCES, 1997~2003)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Washington, D.C. : NCES, 2003), p.494, (<http://nces.ed.gov/programs/digest/d02/tables/PDF/table422.pdf>) [cited 2004. 11 .9]

〈표 3〉 미국 공공도서관 직원의 법적 봉사대상인구별 현황(2000)

구 분	사서직원		기타 직원	소 계
	사서	ALA-MLS 소지자		
법적 봉사대상 인구	1만 미만	6,016 (1,221)	5,479	11,495
	1만~5만미만	11,317 (6,904)	20,404	31,721
	5만~10만 미만	5,156 (3,761)	11,770	16,926
	10만~25만 미만	6,018 (4,858)	15,787	21,805
	25만~50만 미만	4,195 (3,441)	9,492	13,687
	50만 이상	10,416 (9,334)	24,053	34,469
계 (%)	43,118 (33.14)	(29,519)	86,984 (66.86)	130,102 (100.00)

한편 미국의 사서직제는 공직분류에서 논급한 것처럼 아키비스트와 함께 일반직 아래의 23개 독립직군 가운데 하나인 'GS-1400 Library and Archives Group'에 편제되어 있으며, 그 하위의 직렬은 〈표 4〉와 같이 6개로 구성되어 있다.⁵⁾ 그러나 실제로 도서관과 관련된 직렬은 4개이며,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렬은 'GS-1410 Librarian Series' 하나 뿐이다.

이러한 직제구분에 의거하여 지방정부는 사서직(GS-1410)을 채용하게 되는데, 이 때의 등급은 15개 등급 중에서 통상 7등급 이상이다. 모든 사서직 등급에는 도서관학 전문교육의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등급 GS-7에서 제시한 경력과 교육에 상응하는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실제로 많은 도서관은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서직은 전문화된 주제지식을 요구하며, 외국어로 된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외국에 능숙한 지식을 요구하기도 한다. 다만 ALA-MLS를 소지하면 GS-9 등급에 응시할 수 있다.

〈표 4〉 미국 도서관 및 문서관 직군(GS-1400)의 직렬 구성

코드	직렬명	직위의 성격과 직무의 범위
GS-1410	Librarian Series	사서직의 이론, 목표, 원칙, 기법에 관한 완전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직위
GS-1411	Library Technician Series	도서관 및 관련 정보업무의 방법과 기법에 관한 실무지식을 요구하는 직위
GS-1412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s Series	과학기술이나 기타 전문화된 정보를 처리전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위
GS-1420	Archivist Series	공공기록물과 역사적 문서를 전문적으로 축적보존하는 직위
GS-1421	Archives Technician Series	문서관의 각종 비전문적 및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
GS-1499	Library and Archives Student Trainee Series	-

5) United State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op. cit.*, pp.80-81.

그리고 사서직 공무원의 임용방법은 주정부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말 현재 New Jersey를 제외한 49개주 공공도서관 직원의 임용방법을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Alabama를 비롯한 17개주가 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경우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Colorado를 포함한 12개주는 부국장이, Indiana 등의 6개주는 주지사가, Florida 외의 2개주는 주무장관이 임명·승인한다. 그러나 Delaware를 비롯한 나머지 9개주는 임명자와 승인주체를 달리하고 있다.⁶⁾

도서관 직원으로 임용된 후의 경력관리는 어느 직류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도서관협회가 공식문서에서 명시한 경력관리의 대가를 적시하면 우선 문헌정보학 경로와 기타 교육적 경로로 대별하고 있으며, 각각의 공직 출발점은 5가지(서기, 사서 보조원·전문가 보조원, 사서보·전문가보, 사서·전문가, 상급사서·상급전문가)이다. 이를 사서직 경력관리로 한정하면 서기에서 출발할 경우는 3단계(사서 보조원 → 사서보 → 사서), 사서 보조원에 임용되면 2단계(사서보 → 사서), 사서에서 시작하면 다음 단계에 각각 최상위직인 상급사서에 도달하게 된다.⁷⁾

<표 5> 미국 주정부별 공공도서관 직원의 임용방법

기호	임용방법		주정부 수	주정부명
	임명	승인		
A	部局長(Agency Head)	-	12	Colorado, Connecticut, Idaho, Iowa, Maryland, Minnesota, North Carolina, North Dakota, Texas, Utah, Wisconsin, Wyoming
B	委員會(Board)	-	17	Alabama, Arizona, Arkansas, Hawaii, Maine, Massachusetts, Mississippi, Missouri, Montana, Nebraska, New York, Ohio, Oklahoma, Oregon, South Carolina, Washington, West Virginia
C	內務長官(Cabinet Secretary)	-	2	Michigan, Pennsylvania
G	州知事(Governor)	-	6	Indiana, Kentucky, Nevada, New Mexico, Rhode Island, Vermont
CG	內務長官(내각)	주지사	2	Delaware, South Dakota
GS	州知事	상원	2	California, Kansas
SS	州務長官(Secretary of State)	-	3	Florida, Illinois, Tennessee
AB	部局長	위원회	1	Georgia
AG	部局長	주지사	1	Alaska
AGC	部局長	지사·의회	1	New Hampshire
BGS	委員會	지사·상원	1	Louisiana
GB	州知事	상원	1	Virginia

6) 自治体國際化協會, 米國における地方公務員制度(東京: 同協會, 2003), p.26.

7)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Utilization : A Statement of Policy," <<http://www.ala.org/ala/hrdr/educprofdev/lepu.pdf>> [cited 2004. 11. 22]

Ⅲ. 영국의 공직구조 및 사서직제 분석

1. 공직구조의 개혁과정

영국의 공직개혁은 1968년에 제출된 Fulton Report⁸⁾에서 출발하였다. 이 보고서는 당시 전통적으로 행정직이 관리계층을 독점하는 문제점과 더불어 공무원의 계급체계가 부처별로 과도하게 세분된 부처할거주의(departmentalism)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가지의 중요한 후속조치가 단행되었다. 하나는 1971년 National Whitley Council가 공직을 대표하는 일반행정분야의 3개 직군, 즉 행정(Administration), 집행(Executive), 서기(Clerical)를 행정직군(Administration Group)으로 통합하였다. 다른 하나는 관리직군의 신설인데, 이것은 고위공직의 경우 전문지식보다 고수준의 관리책임이 중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장급에 해당하는 'Under Secretary'(Grade 3) 이상의 고위공무원을 소위 '개방구조(Open Structure)⁹⁾로 통합함으로써 직종에 관계없이 가장 적합한 인재를 임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88년에는 현재 진행되는 각종 개혁정책의 모태인 이른바 '집행관리제(The Next Steps)'가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었다. 정책의 방향은 첫째, 각 부처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를 그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둘째, 각 부처는 직원들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도록 관리하며, 마지막으로 각 부처가 정책 및 서비스의 '비용가치(Value for Money)'를 개선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1996년에는 1992년에 제정된 「Civil Service(Management Functions) Act」에 근거하여 미국의 SES와 유사한 고위공무원단(Senior Civil Service)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SCS의 적용대상은 종전의 고위개방구조(Senior Open Structure)에 해당되는 650명에서 3,050명으로 늘어났다.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인력관리의 권한을 각 부처와 부처 내의 하위계층에 위임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SCS에는 임용기간을 제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처간 또는 민간과 공직간의 인사교류를 확대하였으며, 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프로그램과 분권정책이 맞물려 공직구조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현재 영국은 장·차관 및 의원, 군인, 판사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처 소속직원, 지방자치단체 소속직원(교사, 경찰직, 소방직 등), 공기업 소속직원, 공공단체 소속직원 등을 공무원(Civil Servant)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 유형은 근무하는 영역 및 소속부처에 따라 국내의 일반부처에

8) *Fulton Report : Report of the Committee 1966-68 on The Civil Service*(London : H.M.S.O., 1968)

9) Open Structure는 'Grade 7' 이상의 7개 계급(Grade 1 : 사무차관, Grade 2 : 차관보, Grade 3 : 국장, Grade 4 : 일부기관, Grade 5 : 과장, Grade 6 : 일부기관, Grade 7 : 계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Grade 3 이상의 고위직은 종전의 Open Structure와 구별하여 Senior Open Structure로 지칭한다.

근무하는 국내직 공무원과 외무 및 영연방정부에 근무하는 외무직 공무원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후자는 일반 국내직 공무원과 별도로 채용되며 계급체계도 상이하다. 또한 다른 국가처럼 비현업(non-industrial)과 현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지칭할 때는 전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근무영역(국내직, 외무직), 소속부처(중앙부처, 집행기관), 업무성격(현업, 비현업), 임용형태(정규직, 임시직),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총원 및 승진과정(일반총원, 속진총원) 등을 기준으로 더 세분할 수도 있다.

2. 사서직원의 현황과 직제

지난 40년간(1963~2003) 영국의 공무원수는 <표 6>¹⁰⁾에 집약한 바와 같이 불과 33%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 계급별 구성내역을 보면 국가공무원은 고위개방구조와 실무급(administrative levels)으로 양분할 수 있다. 전체 비현업공무원의 약 0.9%를 차지하는 전자는 Grade 1(사무차관)에서 Grade 5(과장)까지의 고위공무원¹¹⁾을 말하며, 정책결정에 깊숙이 개입한다. 반면에 후자는 Grade 6(과장보) 이하의 공무원으로 실무에 종사한다.

<표 6> 영국 공무원수의 변화추이(1963~2003) (단위 : 천명)

연도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계
1963		1,788(47.0)	2,009(53.0)	3,797
1973		2,024(41.2)	2,891(58.8)	4,915
1983		2,384(45.1)	2,905(54.9)	5,289
1993		2,268(45.8)	2,679(54.2)	4,947
2003		2,253(44.4)	2,815(55.6)	5,068

<표 7> 영국 공무원(비현업)의 계급별(직무수준별) 현황(2003. 4)

구분	Headcount 기준(%)	FTE 기준(%)
Senior Civil Service	4,080(0.94)	4,210(0.86)
Level 6~7	22,050(5.09)	23,080(4.70)
Senior/Higher Executive Officer	80,020(18.47)	84,880(17.28)
Executive Officer	110,780(25.57)	125,480(25.54)
Administrative Officer/Assistant	202,780(46.80)	239,680(48.79)
Unknown	13,580(3.13)	13,960(2.84)
계	433,290(100.00)	491,290(100.00)

10) Ole Black, Rhys Herbert, Ian Richardson, "Jobs in the Public Sector Mid-2003," *Labour Market Trends*, Vol.112, No.7(July, 2004), pp.272-273.

11) 최근에는 SCS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함에 따라 종전의 Grade 1~5의 계급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직무의 내용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별로 정한 직위명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SCS 직명은 부처별로 정하기 때문에 기관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부서명도 한국의 실·국·과 등과 같이 일률적으로 부여하지 않아 특정 직위명이나 부서명으로 해당 직위가 어느 수준인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급여 또한 종전의 계급별 산정방식에서 해당직위의 직무비중에 대한 직무평가(JESP)의 결과로 정하고 있다.

2003년 4월 현재 비현업 공무원의 계급별 현황은 <표 7>과 같다.¹²⁾ 이들 가운데 도서관 직원수는 2000~2001년 현재 총 40,053명(국가도서관 2,936명, 공공도서관 25,797명, 대학도서관 11,120명)이다. 그 중에서 공공도서관이 64.4%로 가장 많으며, 그들의 전문직 대 비전문직의 구성비율은 1 : 4.2이다.¹³⁾

영국 공무원의 직제는 다른 대다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종(category), 직군(occupational group), 등급(class), 계급(grade)¹⁴⁾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으로 말하면 계급은 공직을 분류하는 최소 단위이며, 몇 개의 계급과 등급이 직군을 형성하고, 하나 이상의 직군을 묶어 직종을 구성한다. 현재 14개 직군, 11개 직종¹⁵⁾이 있는데, 행정직·비서직·공안직군은 9~10개의 계급으로 세분된 반면에 과학직·연구직·사회보장직·데이터처리직 등은 세부그룹으로 나누지 않고 있다.

먼저 직종은 급여 및 계급체계가 유사한 그룹끼리 묶은 것이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일반직종(General Category)인데 행정직군(Administration Group), 경제직군(Economist Group), 통계직군(Statistician Group), 정보직군(Information Officer Group), 사서직군(Librarian Group) 등 9개의 직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가 하면 과학직종 - 과학직군, 훈련직종 - 교관직군, 비서직종 - 비서직군, 보안직종 - 보안직군처럼 단일의 직종과 직군도 있다. 다음으로 직군은 공무원 인사관리(급여, 채용 등)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분단위로서, 비현업 공무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행정직군 외에 전문기술, 과학, 비서, 정보직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계급은 직군 아래의 특정직위에 부여된 명칭 및 등급을 말하며, 대체로 총 1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직군에 따라 다르다. 주요 직군별 계급현황을 간추리면 <표 8>과 같다. 따라서 영국의 사서직 공무원은 일반직종 산하의 9개 직군 가운데 하나를 형성하는 독립직군이며, 그 아래에는 다시 3개의 계급, 즉 직렬(Senior Librarian, Librarian, Assistant Librarian)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영국 공공도서관의 행정단위는 런던 자치시(London Boroughs)를 포함하는 메트로폴리스 행정단위(urban library authorities)와 카운티 행정단위(county library authorities)로 양분된다. 전자에 산재하는 공공도서관의 범용어는 시립도서관(city libraries)이고 후자는 카운티도서관

12) http://www.civilservice.gov.uk/management_information/statistical_information/statistics/publications/xls/report_2003/table_e.xls [cited 2004. 11. 25]

13) Library & Information Statistics Unit, "Library and Information Statistics Tables 2003 : General Library Statistics," <<http://www.lboro.ac.uk/departments/dils/lisu/list03/gen03.html>> [cited 2004. 11. 28]

14) 계급은 직군 또는 Class 하에서 특정 직위에 부여된 명칭 및 등급으로서, 그 종류는 업무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것은 원래 Fulton Report 이전에 각 부처별로 존재하던 각종 직위군이었으나, 계급체계 정비에 따라 대다수가 없어졌다. 다만 일부는 새로운 직종 및 직군 분류체계에 흡수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여러 부처에 공통적인 일반Class(General Service Class)와 특정부처에 한정적인 부처단위Class(Departmental Class)가 바로 그것이다.

15) 여기에는 일반(General Category), 과학(Science Category), 전문·기술(Professional & Technology Category), 훈련(Training Category), 법무(Legal Category), 비서(Secretarial Category), 사회보장(Social Security), 경찰(Police Category), 연구(Research Officer Category), 박물관(Museums Category), 보안직종(Security Category)이 있다.

관(county libraries)이다. 각각의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공무원은 지방정부가 관리하며, CILIP가 인정하는 대학교육을 이수해야 전문직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¹⁶⁾ 시험의 종류는 행정계급, 사무집행계급, 서기계급, 서기보계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행정계급의 채용시험은 예비 구두시험, 논문·영어·시사문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필기시험, 발전능력을 체크하는 최종 구두 시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하위 단계인 서기보계급은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는데, 대개 전자의 방식으로 80%를 충원하고 나머지 20%는 후자의 방식을 적용하여 선발·채용한다.

〈표 8〉 영국 공무원의 주요 직군별 계급현황

직 군	계급수	계급명
행정직군 (Administration Group)	5	·SEO (Senior Executive Officer) ·AT/HEO(D) (Administration Trainee/Higher Executive Officer Development) ·HEO (Higher Executive Officer) ·EO (Executive Officer) ·AO (Administrative Officer) ·AA (Administrative Assistant)
경제직군 (Economist Group)	2	·Senior Economist ·Assistant Economist
통계직군 (Statistician Group)	2	·Senior Statistician ·Assistant Statistician
정보직군 (Information Officer Group)	3	·Senior Information Officer ·Information Officer ·Assistant Information Officer
사서직군 (Librarian Group)	3	·Senior Librarian ·Librarian ·Assistant Librarian
전문·기술직군 (Professional & Technology Group)	3	·Senior P&T Officer ·Higher P&T Officer ·P&T Officer
과학직군 (Science Group)	4	·Senior Scientific Officer ·Higher Scientific Officer ·Scientific Officer ·Assistant Scientific Officer
비서직군 (Secretarial Group)	2	·Senior Personal Secretary ·Personal Secretary
사회보장직군 (Social Security Group)	2	·Local Officer 1 ·Local Officer 2

16) 黃國正, “公共圖書館專業館員任用制度之比較研究,” 書苑, 第55期(2003, 1), pp.40-52.

IV. 한국의 공직 및 사서직제와 시사점

1. 공직의 분류체계

한국의 현행 공직분류는 영국처럼 계급제에 개방형 임용제 등의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1948년부터 모든 공무원을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구분하였으며, 1981년 이후에는 각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대별하고 전자의 횡적 구분은 일반직·기능직·특정직으로, 후자는 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으로 세분한 총 7개의 직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의 각 직종은 다시 유사한 직무군으로 묶어 직군·직렬·직류, 병과(군인), 경과(경찰) 등으로 종적 구분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도 계급은 아니지만, 그 등급을 연봉(보수)에 따라 몇 단계로 나누고 있다.

그 중에서 공직을 대표하는 일반직의 분류체계는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8232호) 제3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8312호) 제3조 제1항의 '별표 1'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총 10개 직군(공안, 행정, 광공업, 농림수산, 물리, 보건 의무, 환경, 교통, 시설, 정보통신)으로, 지방공무원은 공안과 물리를 제외한 8개 직군으로 나누고 있다.

2003년말 현재 공무원수는 915,945명(행정부 896,579명, 입법부 3,086명, 사법부 14,005명, 기타 2,275명)이며, 그 가운데 행정부가 전체 공무원의 약 97.9%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하면 전자가 64.6%(576,448명), 후자가 35.4%(317,131명)로 지방분권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국가공무원이 많다. 이를 유형별로 세분하면 <표 9>와 같다.¹⁷⁾ 그리고 사서직 공무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 현황은 <표 10>처럼 2002년말 현재 1,958명이다. 그러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의 배치기준에 근거한 사서직원의 정원 대비 확보율을 추계하면 평균 22.8%(시·도청 17.9%, 시·도교육청 26.5%)에 불과하다.

<표 9> 한국의 행정직 공무원 현황(2003)

구분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특정직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소계	계
국가직	115	2,358	58	417,358	93,870	65,600	89	579,448	896,579
지방직	1	4,302	-	27,616	200,940	82,032	2,240	317,131	
소계	116	6,660	58	444,974	294,810	147,632	2,329	896,579	-

17) 행정자치부, 행정자치통계연보(서울: 행정자치부, 2004), pp.90-93.

〈표 10〉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 확보현황

구 분	산출지표		현 원 (명)	정 원 (명)	기준 도달율 (%)
	면적(m ²)	장서(권)			
시·도청	540,248	12,076,956	654	3,650	17.9
시·도교육청	544,099	18,397,411	1,254	4,715	26.5
계	1,084,347	30,474,367	1,908	8,365	22.8

* 산출근거(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2) :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2. 사서직제의 분석과 시사점

가. 사서직제의 분석

1948년 11월 17일자로 제정된 국내 최초의 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법규인 「인사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 제30호) 제5조는 직종을 구분하지 않은 채 직급을 1급(차관보)~15급(技員, 巡警)까지 나누었으나 사서직은 명시하지 않았으며, 1949년 2차례 개정(대통령령 제72호와 제85호)된 후 동년 11월 5일자로 폐지되었다.¹⁸⁾ 그리고 이 규정을 대체한 1949년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08호) 제11조의 '별표 1'은 공무원을 직군이나 직렬로 분류하지 않고 직급만 규정하였으며, 사서직도 3급 갑류와 을류에 '사서관'을, 4급 갑류와 을류에 '사서'를 명시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이라는 법적 신분을 갖게 되었다.

이어 1950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436호)에서도 직군 및 직렬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사서직의 경우 3급 갑류 및 을류의 '사서관'은 그대로 둔 반면에 4급 갑류 및 을류의 '사서'는 폐지되었다. 1961년 4월 15일에는 종전의 「공무원임용령」을 폐지하는 대신에 새로운 「공무원임용령」(국무원령 제240호)을 제정하면서 국내 최초로 '직계 - 직부 - 직군 - 직렬'로 이어지는 분류체계를 도입하였다. 이 법령의 제33조(직종표) '별표 1'은 '공무원의 직계별, 직부별, 직군별, 직렬별, 급별, 류별 직종을 2개 직계(사무계, 기술계)로 대별하였다. 사무계는 다시 3개 직부(일반행정, 재정경제, 외무)로 나누었으며, 일반행정직부는 9개 직군(행정, 법무, 검찰사무, 형무, 공안, 학예, 운륜, 교정, 방송)으로 구분하였다. 사서직은 학예직군의 7개 직렬(편수, 교무, 학예, 사서, 국략, 연예, 통역) 가운데 하나로 편성되었으며, 직급별 명칭은 3급 갑류를 '사서관', 3급 을류를 '사서관보', 4급 갑류를 '사서', 4급 을류를 '사서보'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1963년 5월 29일 「공무원임용령」이 각령 1317호로 대체되면서 사서직렬은 행정직군으로 이속되었다. 직명은 3급 갑류를 사서관(4급), 3급 을류를 사서관보(5급)로 구분하고 그 동안

18) 이 규정은 1949년 12월 15일자로 대통령령 훈령으로 바뀌어 다시 제정되었다.

없었던 5급 갑·을류(현재의 8~9급) 직급을 신설하였으며, 그 체계를 9등급으로 세분하여 직급별 직명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1970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5449호)에서는 사서직의 최상위 직급인 4급을 5급으로 낮추었다. 그 후 1981년 6월 10일자 개정령(대통령령 제10345호)에서는 최상위 직급이 4급으로 환원되었으나 1996년부터 복수 직급제를 시행함으로써 사서직의 위상은 다시 약화되었다. 그리고 직급별 직명은 1991년 6월 27일자로 개정된 임용령(대통령령 제13400호)에서 변경된 이래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법률 제7187호)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8416호) 제3조 제1항 '별표 1'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6786호)의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18312호) 제3조 제1항 '별표 1'에 규정된 사서직 공무원의 직급 및 명칭은 <표 11>과 같다. 요컨대 사서직군은 1949년의 「공무원임용령」에서 단일직군이었던 1961년 개정법령에서 학예직군에 편입되었으며, 1963년 이후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행정직군에 예속되어 있다. 그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표 12>와 같다.

<표 11> 사서직 공무원의 직급 및 명칭

구분	직군	직렬	직급								
			1	2	3	4	5	6	7	8	9
국가 공무원	행정	사서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사서 서기관	사서 사무관	사서 주사	사서 주사보	사서 서기	사서 서기보
지방 공무원	행정	사서	지방 관리관	지방 이사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 사서 서기관	지방 사서 사무관	지방 사서 주사	지방 사서 주사보	지방 사서 서기	지방 사서 서기보

이러한 직제 하에서의 인사제도는 상위법률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비롯한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의 관련법률과 그 하위법령인 각각의 시행령과 기타 대통령령(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령과 위임규정을 포함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정부조직 산하기관에 설치된 도서관(자료실)과 국립대학도서관은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이 설립한 공공도서관과 공립대학도서관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따라 채용·관리된다. 그리고 승진임용의 경우, 국가직과 지방직을 막론하고 6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기준으로 임용하는 반면에, 가장 주목받는 5급(사무관)은 각 부처가 「공무원임용령」 제34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3가지의 임용방법(승진시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승진시험과 승진심사의 혼용) 가

운데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이 때 사서직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승진소요 최저연수(3급 이상은 3년, 4급 및 5급은 5년, 6급은 4년, 7급 및 8급은 3년, 9급은 2년)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소 연한은 부처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기거나 정원이 늘어나 승진이 가능하다. 게다가 1998년에 행정자치부가 실제의 승진소요기간을 부처별로 조사한 결과, 9급에서 8급은 평균 4년 1개월, 8급에서 7급은 6년 6개월, 7급에서 6급은 7년 3개월, 6급에서 5급은 9년 9개월, 그리고 5급에서 4급은 9년 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사서직 공무원의 직제 변천과정

구분	직군	직급						비고
		4급 (3급갑류)	5급 (3급을류)	6급 (4급갑류)	7급 (4급을류)	8급 (5급갑류)	9급 (5급을류)	
1949. 11. 5 (대통령령 제208호)	없음	사서관	사서관	사서	사서			· 신설
1950. 12. 30 (대통령령 제436호)	"	사서관	사서관					· 6~7급 삭제
1952. 8. 16 (대통령령 678호)	"	사서관	사서관	사서	사서			· 6~7급 부활
1961. 4. 15 (국무원령 240호)	학예	사서관	사서관	사서	사서보			· 학예직군에 편입 · 7급 직명 변경
1963. 5. 29 (각령 1317호)	행정	사서관	사서관보	사서	사서보	사서 서기	사서 서기보	· 행정직군에 편입 · 8~9급 신설 · 5급 직명변경
1970. 12. 31 (대통령령 5449호)	"		사서관	사서	사서보	사서 서기	사서 서기보	· 4급 삭제 · 5급 직명변경
1977. 9. 14 (대통령령 8691호)	"		사서관	사서	사서보	사서 서기	사서 서기보	· 9급 직명 변경
1981. 6. 10 (대통령령 10345호)	"	사서관	사서관	사서	사서보	사서 서기	사서 서기보	· 4급 부활
1991. 6. 27 (대통령령 13400호)	"	사서 서기관	사서 사무관	사서 주사	사서 주사보	사서 서기	사서 서기보	· 직명변경

나. 사서직제 분석의 시사점

지금까지 분석한 3개국의 공직 및 사서직제는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를 집약·비교하면 〈표 13〉과 같다. 그 가운데 주요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첫째, 공직분류의 경우, 미국은 직위분류제의 기반 위에 계급제(고위공무원단)를 가미하는 형태인 반면에 영국은 계급제의 토대 위에 직위분류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도 계급제를 기본골격으로 하며, 2006년부터 직위분류제(1~3급 고위공무원)를 적용할 예정이다.

〈표 13〉 3개국의 공직 및 사서직제 비교

구분	미 국	영 국	한 국
공직분류의 골격	직위분류+(계급제)	계급제+(직위분류)	계급제+(직위분류)
공무원 구분	국가직/지방직	국내직(비현업)/외무직(현업)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수	20,970천명(2001년)	5,068천명(2003)	896,597명(2003)
직군수	23개	14개	10개(국가직) 8개(지방직)
사서직의 공직분류	독립직군(GS-1400)	독립직군(Librarian Group)	행정직군
도서관 직원수/ 사서직원수	185,000명/43,000명 (2000년)	40,053명/9,536명 (2001년)	11,594명/5,452명 (2002년)
공공도서관 직원수	약 13만명	25,797명	5,398명

둘째, 사서직제의 경우, 미국과 영국은 각각 독립직군으로 분류한 반면에 한국은 〈그림 1〉처럼 행정직군 내의 사서직렬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직 내에서 사서직의 전문직성을 부인하는 단초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직제개선의 당위성이 배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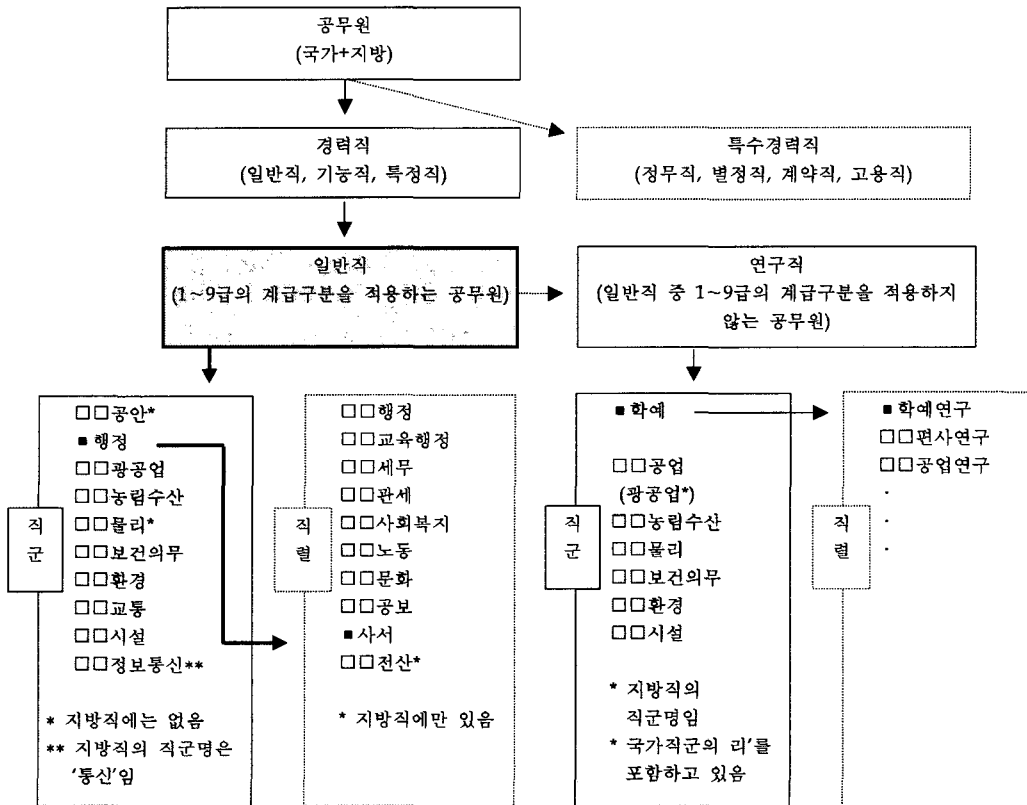
셋째,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은 사서직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개선되어야 하는데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 동안 학계와 현장은 사서직군의 독립신설이나 학예직군 내의 연구직렬로의 이속과 함께 최상위 직급을 최소한 2급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넷째, 현행 사서직제를 개편하는 것만이 취약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충하고 저락한 사회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유일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도서관의 핵심기능을 강화하고 사서직의 전문성을 제고시키며 양질의 정보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따라서 행정직군에 예속된 사서직렬을 분리·격상시키거나 연구직으로 이속시키는 등의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위 문화선진국인 영미의 사서직제를 벤치마킹할 경우에는 과거에 제안된 바 있는 여러 대안의 이론적 및 현실적 취약성과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논리적 근거의 정당성과 충실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서직의 단독 직군화를 주장할 경우에는 그 아래에 복수의 직렬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연구직화를 제안할 때는 사서직과 학예직의 동질성 내지 유사성을 어떻게 논증할 것인지, 복수직군을 대안으로 상정할 경우에는 사서직의 정체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현행 사서자격제도와 직무분석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가능한지 등을 정밀 검토해야 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사서직제는 도서관 및 사서직의 정체성과 직결되며, 양자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국가의 공적 잣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직종과 마찬가지로 사서직도 직제에 민감

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의 개선이 도서관과 사서직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명약이거나 유일한 처방은 아니다. 비록 직제개선이 지상명제일지라도 교육시스템의 개혁, 자격제도의 전면적 보완, 인력선발 및 임용방식의 재검토, 현직자를 위한 교육훈련의 강화, 다면적이고도 정교한 직무분석을 통한 난이도와 전문성의 평가, 유사한 성격의 지식문화기관에 대한 분석과 비교, 관련법령의 개정과 정비 등의 선결 내지 후속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각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17〉 일반(행정·연구)직 공무원 중 사서직 및 학예직의 직렬구성

V. 결론

대다수 선진국은 정부조직의 재구조화, 직제개편 및 개방형 임용제를 통한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핵심메뉴로 설정하여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수단적 스펙트럼은 각양각색이지만, 모두가 공직의 행정능력 제고와 전문성 강화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행

정개혁의 대조류에 주목하여 영미 및 한국의 공직과 사서직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논급하였다.

도서관이 사서직의 생태계라면, 사서직은 도서관의 핵심종이며 버팀목이다. 사서직이 지향해야 할 최선의 시나리오는 도서관 내외의 환경변화를 포용하는 한편, 전통적인 핵심기능과 디지털 접근 패러다임에 인터넷 정보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서비스 이념을 구축하고 존립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도서관과 사서직은 계속해서 종과 개체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서직이 고도의 전문지식, 철저한 봉사자세, 그리고 타임캡슐을 중시하는 직업관을 가지고 시대적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제도가 부실하거나 그로 인하여 자긍심을 갖지 못하면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 발원지인 동시에 단초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사서직제이다. 비록 직제개편이 도서관의 정체성과 전문직성을 강화하는 유일한 해법은 아닐지라도, 사서직이 바람직한 직제를 기반으로 아날로그 자료와 실물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고 인터넷과 디지털로 수렴되는 지식사회의 신조류를 수용할 때 정보네트워크의 온실효과는 사서직의 성장과 발전을 추동하며 업그레이드된 전문직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영미와는 달리, 사서직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부정하는 한국의 공무원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지난 30년간 학계와 현장은 사서직군의 신설이나 연구직으로의 이속문제와 더불어 직급의 상향조정을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문화선진국의 직제를 준용할 경우에는 사서직에 내재된 이론적 및 현실적 취약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거를 개발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도서관계는 사서직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는 사고의 편협성을 극복하고 무임승차하려는 의타심을 버려야 한다. 요컨대 사서직제의 개선에는 사고의 유연성과 주체적인 행위가 절실하다.

참 고 문 헌

- 國公立大學圖書館協議會. 國公立大學圖書館協議會四十年史 : 1962~2002. 春川 : 同協議會, 2004.
- 김명식.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개편방향." 2003년도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551-572.
- 大谷 康晴. "公共圖書館職員を對象とした「上級司書」認定と専門性評價." 専門圖書館, No.206 (2004-II), pp.6-13.
- 薛理桂. 中英圖書館事業比較研究. 臺北 : 文華圖書館管理, 1995.
- 藥師院はるみ. "専門職論と司書職制度 : 準専門職から情報専門職まで." 圖書館界, 第56卷, 第1号 (May 2004), pp.2-12.

- 윤희윤. “도서관정책의 신조류와 시사점.” *國會圖書館報*, 제34권, 제4호(2004, 1), pp.16-30.
- 윤희윤. “사서직의 직업적 위상과 전문직성.” *도서관*, 제60권, 제1호(2005 봄), pp.
- 이두영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문화부, 1990.
- 自治体國際化協會. 米國における地方公務員制度. 東京 : 同協會, 2003.
- 黃國正. “公共圖書館專業館員任用制度之比較研究.” *書苑*, 第55期(2003, 1), pp.40-52.
- Abbott, Andrew. “Professionalism and the Future of Librarianship.” *Library Trends*, Vol.46, No.3(Winter 1998), pp.430-443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Utilization : A Statement of Policy.” <<http://www.ala.org/ala/hrdr/educprofdev/lepu.pdf>> [cited 2004. 11. 22]
- Black, Ole, Rhys Herbert, Ian Richardson. “Jobs in the Public Sector Mid-2003.” *Labour Market Trends*, Vol.112, No.7(July 2004), pp.271-281.
- Cheng, Grace. “The Shifting Information Landscape : Re-inventing the Wheel or a Whole New Frontier for Librarians.” *Australian Library Journal*, Vol.49, No.1(Feb. 2000), pp.17-26.
- Danner, Richard A. “Redefining a Profession.” *Law Library Journal*. Vol. 90(1998), pp.315-356.
-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Libraries, Museums, Galleries and Archives for All : Co-operating Across the Sectors to Tackle Social Exclusion*. London : DCMS, 2001.
- Dominique, Arot. “Les Valeurs Professionnelles du Bibliothécaire.” *Bulletin des Bibliothèques de France*, Vol.45, No.1(2000), pp.33-41.
- Gorman, Machael. *Our Enduring Values : Librarianship in the 21st Century*. Chicago : ALA, 2000.
- Library & Information Statistics Unit. “Library and Information Statistics Tables 2003 : General Library Statistics.” <<http://www.lboro.ac.uk/departments/dils/lisu/list03/gen03.html>> [cited 2004. 11. 28]
- Library of Congress. *Annual Reports of Librarian of Congress : 2001*. <http://www.loc.gov/about/annrept/annreports/fy2001/loc__2001-pgs__225-238.pdf> [cited 2004. 11. 19]
- U. 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Public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 Fiscal Year 2001*. Washington, D.C. : NCES, 1997~2003.
- U.S. Census Bureau.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 2003*. Washington, D.C. : The Bureau, 2003.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Handbook of Occupational Groups and Families*.
Washington, D.C. : OPM, 2002.

http://www.civilservice.gov.uk/management_information/statistical_information/statistics/publications/xls/report_2003/table_e.xls [cited 2004. 11. 25]

<http://www.loc.gov/about/reports/> [cited 2004. 11. 19]